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 - 223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6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09년 G20 합의사항 이행 및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 전반의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위한 거래정보저장소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 골자

가. 거래정보저장소의 지정(안 제5-50조의2)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 수집·보관·관리를 위한 기관으로서 거래정보 저장소의 도입

나. 거래정보의 보고(안 제5-50조의3)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당사자들에게 거래정보저장소로의 거래정보 보고 의무를 부과

다.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안 제5-50조의4)

거래정보저장소가 거래정보저장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거래정보저장소가 해당 업무 외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

라. 거래정보의 제공·공시(안 제5-50조의5)

거래정보저장소가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거래정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9. 4. (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 (전화)02-2100-2654, (FAX)02-2100-2648, (e-mail)hjchang@korea.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